

<p>○ 현행조례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5에서 조례와 다르게 개정(2000.10.20)함으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p> <p>아.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안 제25조의2)</p> <p>○ 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전세대상재산, 전세금납부방법, 전세금액, 전세금관리, 전세금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p> <p>자. 변상금의 청문 등(안 제28조의2)</p> <p>○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징수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문제도를 둘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변상금청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함.</p> <p>나. 주요골자</p> <p>○ 합의제기관의 장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4호).</p> <p>○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공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의2).</p> <p>○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p> <p>○ 공인은 시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p> <p>○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p> <p>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p>가. 합의제기관의 장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합의제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나. 특수공인(안 제3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p> <p>다. 공인의 등록(안 제8조) 기존에는 공인을 교부하였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교부하는 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인은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안 제10조) 전자결재가 일반화됨으로써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는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한 것임.</p> <p>마. 공인의 공고(안 제11조)</p>				
<p>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906</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p> <p>가. 제안이유</p> <p>○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관련</p>	의안	906	번호		<p>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p> <p>2001년 6월 14일</p> <p>2001년 6월 25일</p>
의안	906				
번호					

<p>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하여 널리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함. 공고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p> <p>별표 제2호 분야별 수수료의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중 “마. 석유판매업 등록(1종)”을 “마. 석유판매업 등록(2종)”으로 하고, 마목의 “(1)일반대리점·용체대리점”란 다음에 “(2)부생연료유판매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 style="width: 15%;">단위</th><th style="width: 25%;">금액</th><th style="width: 35%;">근거법령</th></tr> </thead> <tbody> <tr> <td>(2) 부생연료유판매소</td><td>1건</td><td>20,000원</td><td>석유사업법 제31조</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p>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근거법령	(2)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석유사업법 제31조	<p>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근거법령						
(2)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석유사업법 제31조						